

제42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 1월 10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195)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1)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1)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9)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0)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8)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9)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9)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1)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4)
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1)
1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8)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5)
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2)
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5)
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8)
2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2)
2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0)
22.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2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8)

-
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9)
 2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3)
 2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6)
 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4)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0)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3)
 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2)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6)
 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7)
 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5)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7)
 3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2)
 3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9)
 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8)
 4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0)
-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4
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195)	7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1) ..	7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7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7
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1)	7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7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9)	7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0)	7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8)	7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9)	7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9)	7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1)	7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4)	7
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1)	7
1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8)	7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5)	7
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2)	7
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5)	7
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8)	7
2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2)	7
2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0)	7
22.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7
2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8)	7
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9)	8
2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3)	8
2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6)	8
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4)	8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90)	8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8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3)	8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3)	8
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2)	8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6)	8
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7)	8
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5)	8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7)	8
3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2)	8
3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9)	8
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8)	8
4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0)	8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법안1소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왜 이의가 있지요?

○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내란죄 재의 요구해서 기각……

마이크 안 줘요?

○ **김용민 위원** 그냥 표결하시지요. 뭐 굳이 얘기를 들어요?

○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이의가 있는 이유를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이의 왜 있냐고 물어봐서 답을 하는데……

○ **위원장 정청래** 예, 유상범 간사님, 이의가 있는 이유를 잠깐 얘기하세요.

○ **유상범 위원** 우리가 내란죄 재의…… 아니, 내란죄가 아니라 특검법 재의 요구해서 기각된 지가 불과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유상범 간사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하시지요.

○ **유상범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3분 하세요, 시간 때문에.

○ **유상범 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죄 특검법에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해서, 원래 소위 말하는 제삼자

추천으로 했던 법안을 하루 만에 뒤집어서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 형식으로 바꿔서 일방 통과시켰고, 그러나 그것이 재의 요구돼서 부결이 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된 법안을 하루 만에 뚝딱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상정하는 이런 식으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이와 같은 법안 상정이 제대로 된 법안 상정인지 또 법안 발의인지, 국회에서는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이렇게 신속하게 아주 초스피드로 법안들이 다 상정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정법 아닙니까? 제정법이라면 이와 같은 숙려기간을 지켜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법안인데 이런 법안을 어제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늘 오후에 1소위에서 논의하고……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 내는 듯한 모습, 이것 국민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도 늘 강조하시잖아요. 항상 법을 준수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 법에 있는 정신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예외조항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 예외조항에 따라서 한다, 그것이 곧 법대로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을 조금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의도하고 목적하면,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처리 진행은 대한민국 법률 문화와 의회민주주의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어제 발의하고 오늘 다시 상정하고 또 법안소위에서 오후에 논의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국회법 59조에서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상시라면 국회법 59조 숙려기간, 제정법안의 경우 20일이 경과되는 숙려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시기이고 비상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사실상 지금 온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굉장히 피곤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체포되나 이것을 자다 깨다가, 자다 깨다가 일어나서 계속 검색해 보는 전 국민이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피곤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합심해 노력해서 이런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언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하는 것이 최대의 국정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런 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고.

재의결에서 2표가 부족했습니다, 198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빨리 이 내란을 종식하고 진압해야 한다 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내란 선동 아니야, 저거? 우리가 내란 하고 있나, 지금?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부결된 재의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계속 양보를 요구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삼자 특검 추천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리고 야당의 비토권도 사실상 큰 양보를 해서 국민의힘도 이 정도면 찬성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하루속히 신속하게 처리할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게 지금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1소위에 회부해서 토론하자는 것이니만큼 아침부터 표결하고 이런 사항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간사도 한 말씀……

○**위원장 정청래** 예,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회법 59조에 의하면 숙려기간의 경우에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란 특검의 문제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 내란 특검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뒤에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래의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 의해서만 추천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저희들의 대폭 양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유상범 간사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러면 내란법이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골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인—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안내에 의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백골단을 자처하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제2의 내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폭 양보된, 우리 위원장님은 무장해제된 법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이 특검법안이 오늘 상정돼서 1소위에서 통과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 두 분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잠깐만 나오세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빨리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주시면……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양쪽 간사한테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는 안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중요한 안건이잖아요. 표결에 앞서서 위원들 간에 좀 진지한 논의를 한 다음에 표결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195)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1)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1)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4)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9)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0)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8)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9)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9)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1)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4)
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1)
1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8)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5)
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2)
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5)
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8)
2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2)
2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0)
22.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2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8)

-
- 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9)
 - 2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3)
 - 2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6)
 - 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4)
 -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0)
 -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3)
 -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3)
 - 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2)
 -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6)
 - 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7)
 - 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5)
 -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7)
 - 3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2)
 - 3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9)
 - 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8)
 - 4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0)

(10시11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4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민홍철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민홍철 의원 예.

○위원장 정청래 민홍철 의원님,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의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인구 53만의 대도시이자 창원을 제외하고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소송사건은 물론 가사 및 경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고 김해에서 창원으로 가는 유일한 이동 경로인 창원터널은 극심한 정체로 인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와 기회비용 상실이 연간 무려 약 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김해시에는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재판 등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김해시 사건 수는 26만 2554건으로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본원 전체 사건 수인 57만 5798건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와 기업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김해지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종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군법원을 통한 사법 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 서비스를 향유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인구 53만 도시 김해시의 오랜 사법

서비스 확대 요청에 부응하여 김해지원 설치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민홍철 의원님, 이례적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직접 와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해시에서 시민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민홍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해시민들, 그 인근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제출 난민법 일부개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 사유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 세계적인 테러 사건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칠 위험’의 자의적 판단 등이 난민인정자의 법적 지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군·구청장 협의회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 의견 수렴 방안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2024년 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명단이 공개된 임금 등의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될 예정임을 고려해서 개정안 시행시기도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은 특별감찰관후보자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특별감

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가장 연장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중립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관세법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업무 고용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갑질 폭행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다만 반의사불벌죄의 일률적 적용 배제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에 대한 찬반론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 발달 정도나 그리고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1항부터 제2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6항까지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으로서 응시자가 1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 교육의 부실화 및 변호사에 대한 전문성 저하 우려 등에 대해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사람, 현정질서 파괴범죄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법률안의 심사에서는 사면 제한 사유별로 그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사면 제한 사유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항목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실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물이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 등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7항부터 제4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0항까지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자에 마약류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이들에게 의사,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관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으나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확실하여 분쟁 가능성의 적은 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법률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무역보험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구상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변제 능력이 충분하며 관련 사건 수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 기관에 추가하는 것은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간사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대·21대 국회에 비해서 법사위가 상당히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저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지 않고 거의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실장한테 확인해 보니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거라든가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 있는 거 한 8건 정도가 있고 대부분 모든 법은, 법사위에 올라온 타 상위 법은 거의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법사위 고유법안은 통과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타 상위법에 비해서.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면 비쟁점 법안도 통과를 시켜서, 쟁점 법안은 또 법안소위에서 토론시간도 길고 하지만 비쟁점 법안은 그렇게 토론시간이 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쟁점 법안은 많이 좀 통과시켜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당에 관계없이 지금 상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까지 발의된 법안을 끊어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정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지금 밀려 있는 법이 법사위 고유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쟁점 법안은 속도를 좀 내서 시기에 맞게 통과될 수 있도록 특히 법안소위 1소위 위원님들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안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양쪽 간사님?

○ 유상범 위원 5분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 정청래 예,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손 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 내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 김용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지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차관이 들고 나와서 설명했던 재의요구서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여기 재의요구서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임명하는 게 권력분립에 위반된다. 저는 이미 현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서 틀렸다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간 이걸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가 특검의 제도적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미 수사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너무 수사 기간도 길고 수사 인력도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세 번째가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112조의 내용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걸 브리핑하는 게 문제 가 있다,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반영을 해 봤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거부권 행사 그만하고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정부도 동참해라라는 이유에서 저희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야 6당이 진짜 큰 결단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추천권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의힘 대표였지요, 한동훈 대표도 제삼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그대로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성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요. 하지만 수사권 가지고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그거 가지고 영장 청구가 적법하나 부적법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십니다,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특검으로 정리하자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20일 줄였고 수사 인력도 50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너무 비대하다라는 주장도 이제 더 이상 설 근거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군사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볼까요? 이 내란은 대통령실과 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곳을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돼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긴 해야지요.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야 6당이 다 수용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돼서 돌아가시면 이 정도까지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

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법안 내용을 제가 잘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일옹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소위 때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정부도 이제 협조해야 됩니다. 내란을 빨리, 하루빨리 끝내야 돼요.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계속 유지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발의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그동안 논의에서 빠져 있던 것을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특검법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해요, 그동안 태도를 보면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이 특검법이 매우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면 곧 있으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될 것 같습니다.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 기간 제한이 있지요? 구속 기간 제한 며칠입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재 공수처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 공수처에서는 10일을 하고 검찰에서 10일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일입니다. 20일 이내에 윤석열에 대해서 기소를 마쳐야 돼요. 그런데 특검이 그 전에 출범하지 않고 구속 기간 이미 지나서 윤석열이 기소된 이후에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의 수괴를 수사하지 못하는 특검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사권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하루빨리 특검이 출발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제거하고 윤석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급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직무대행님,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한 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우리 김석우 직무대행을 칭찬했다라고요. 칭찬의 요지가 뭐였느냐면 법조항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법조항대로 답변하더라. 이 부분을 어떤 언론에서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침예하게 의견과 의견, 주장과 주장이 맞붙을 때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한 대로 위헌적 특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일을 성사시키려다 보니까 약 6당이 큰 결단을 하고 정부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양보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고맙다, 우리 열심히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에 대한 해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공수처에서 지금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걸로 확인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질의를 안 그래도 유상범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처에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하려고 했더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받는 시스템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길을 못 찾던 중에 어제 공수처장이 단정적으로 그런 일이, 청구한 일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그것으로 일단 해명이 된 것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법원행정처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현재로서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확인을 못 하신 상황이네요, 지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만 다만……

○곽규택 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다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서면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회신하신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취지로……

○곽규택 위원 예,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서면 회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선 법원에서 영장 청구·발부·기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행정처장님 그렇잖아요. 원래 만약에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 그러면 체포영장 재청구할 때는 재청구의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재청구하게 돼 있지요, 같은 법원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기각됐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발부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기각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새롭게 체포영장 청구했다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문제가 있는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법원행정처에 공수처에서 작년 12월 달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건수와 발부 건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게 아니니까, 통계 자료니까 반드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접수되면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 특검이 발족해 가지고 내란수괴에 대한 기소를 못 할까 봐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그래서 만약에 기소할 수 있으면, 특검이 도입될까 봐 기소를 주저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기소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특검에서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던 수사를 갖다가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그리고 기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사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신병을 반드시 확보해야 기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그리고 체포영장의 통계를 보면 집행된 체포영장이 많습니까, 집행하지 못한 체포영장이 많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집행하지 못한 체포영장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실무상으로는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지고 지명수배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기록에 첨부해 놓는 용도지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가 가지고 잡아 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시든지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중에 특검법안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특검에서 할 수 있는 수사를 남겨 놓기 위해 가지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너무 빠르니까 빨리 특검해야 된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법안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그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어제 국회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창원지검의 검찰 수사보고서 보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뉴스타파에 보도된 것과 같은 12월 4일 자 수사보고서 자체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어저께 확인을 했고.

창원지검에서 9월 30일 자 김혜경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서 11월 4일 자로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박지원 위원 오케이.

11월 4일 창원지검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계엄의 방아쇠가 됐다는 거예요, 김용현한테 ‘이게 나라냐’.

우리가 처음 보고 나왔을 때 무속적이다,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장관직무대행이 당시 차관으로서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그 당시 창원……

○박지원 위원 오케이. 됐어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방아쇠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고발 사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차장으로 있잖아요. 그분은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바에 의하면 박지원이 고발 사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두 분이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지원 게이트다 운운했단 말이에요. 박지원 데려다 조사해 봤어요? 관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멀쩡한 사람을 말이지요.

그 고발 사주의, 지금 현 국민의힘 공천받은 동대문구청장하고 국정원 직원인데 제가 안다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다고 본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태균·김건희가 게이트로 명명했다고 하면…… 이게 모든 것이 명태균·김건희·윤석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어제 국회에 백골단까지 등장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44명이 한남동 공관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윤석열 살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한다고 하면 수갑 채워서 끌고 가면 국격이 떨어진다…… 체포하면 수갑 채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권영세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던데 장관직무대행,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해서 저항하는데 잡아 가지고 수갑 채워서 가면 국격 떨어지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

○박지원 위원 국격 떨어지느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여러 가지 장치 중의 하나가 수갑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크게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게 국격이 떨어집니까?

세상에 말이지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윤석열·김건희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는데 외신들한테 인터뷰를 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 위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찌느냐, 검찰이 어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삼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 할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담당 장관직무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하자고 건의할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은 아직 소위에서 논의도 남아 있는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을 해서……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거부권 행사 진언할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직 거부권 행사를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박지원 위원**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최상목 대행의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31%, 부정적인 게 56%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알았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부권 진언하지 마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살펴볼 게 아니라 하지 마시라고. 수용됐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현성이 없어졌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현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현성이 있다는 특검의 추천권이 제삼자 대법원장이 하고, 대법원장이 두 분 추천하면 야당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게 모두 해결됐지 않냐 이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은 해결된 것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이 뭐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것은 소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예’ 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유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민들의 인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곤 합니다. 방금 법무부차관께서 그동안의 특검에 대해서 위현성이 있었고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위현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내란 특검 등 각종 특검이 위헌적이었다, 마치 기정사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인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특검에 대해서 저는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야 6당이 결단을 통해서 대법원장 추천 부분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압력이 있어서 되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법무부차관님, 오늘 22항 특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저께 재의 요구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딱 하루 지나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다시 또 발의하고 상정했는데 결국 민주당 의도는 특검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특검은—어저께도 말씀하셨지요—예외성·보충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수사기관이 아주 경쟁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지금 거의 다 구속해서 기소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검이 만약에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임명하고 그리고 진용 갖추고 사무실 구하고 이러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일, 30일 걸려요. 그사이에 이 수사기관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된 사유를 보겠습니다. 8호를 보니까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글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 정부의, 국가의 대북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 특히 해외분쟁지역 파병이나 대북확성기 가동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특검의 수사 사항이 돼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북한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8호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각 호에 있는 내용과 달리 시기가 특정이 안 되는, 다른 각 호에 있는 사유들은 딱 보시면 이게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8호 같은 경우는 기간 특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에 있었던 이라크 파병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간 특정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해외 파병이라든지 대북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약간 모호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특정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대북 문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자꾸 제2의 내란을, 아직도 ‘내란, 내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

엇입니까? 무슨 죄, 물론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자꾸 ‘내란, 내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꾸 ‘국격, 국격’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지금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러고서 탄핵이 혹시 인용된달까 그러면 그때 해도 나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계속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대통령을 정말 구속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한다, 그것은 계속 이것 뭔가 빨리 탄핵 절차를 종결시켜서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조급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재판소 쳐장이 나왔으면 제가 물어볼 건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봐야지 국민을 봅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탄핵 사유에 내란죄 철회한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들이 51% 반대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현재 쳐장이 말씀하신 취지는 당연히 현재는 헌법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본에 깔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야 될 규범이 헌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 말씀에……

○조배숙 위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말 엄정 중립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결국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가 정치기관임을 자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판에 승복을 할 수 있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철래 의사진행발언이요?

○박균택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철래 꼭 해야 되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박균택 위원 지금 조배숙 위원님께서 내란이 종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은 거기에 동조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 보고 하세요.

○박균택 위원 예.

지금 내란수괴가 버젓이 저렇게 벼티고 있고 국힘 의원들이 거기 가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게 무슨 내란이에요?

○박균택 위원 내란 범죄를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배숙 위원 그게 무슨 내란입니까!

○박균택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그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사법부를 공격하고 수사기관을 공격하면서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 그게 성공해야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윤석열 측의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이 나서고 태극기 모독 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란이 끝난 것입니까? 그런데 저런 발언을 하고 법무부차관은 야당의,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을 하더니 지금은 외환죄에 대한 특검법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적극적인 답변을 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것 이게 적절한 태도인 것입니까?

저런 편향적인 답변 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들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질문하는 그 자세 바꾸도록, 문제 있는 태도를 바꾸도록, 품격을 유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본인이나 유지하세요, 국수본이랑 내통이나 하지 마시고.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박균택 위원 그게 내란범이 아니에요?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희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내통을 하고 있는데!

○주진우 위원 고함지르지 마세요!

○박균택 위원 내 발언에 왜 시비를 겁니다?

○주진우 위원 본인이 내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발언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먼저 조배숙 위원 발언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박균택 위원 내란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내란범이 아니고 뭐예요!

○유상범 위원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야?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해요?

○박균택 위원 왜 내가 발언하는 데 나섭니까?

- 주진우 위원**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국가수사본부랑 내용이나 하지 마십시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유상범 위원** 박균택 위원, 안 그러더니 왜 이래요? 위원들 발언에,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무슨 비판……
- 위원장 정청래** 자, 저기……
-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면 왜 내 발언에 나서냐 이 말이에요!
- 주진우 위원** 조배숙 위원 발언에 먼저 나섰지 않습니까!
- 박균택 위원** 내 발언에 왜 나서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정청래** 서로……
- 주진우 위원** 조배숙 위원의 발언에 안 했어요?
- 박균택 위원** 나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 조배숙 위원** 우리도 의사진행발언합시다.
- 위원장 정청래** 자, 조용히 해 주세요.
- 박균택 위원** 왜 사적으로 나섭니까!
- 유상범 위원** 아니, 답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제지하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 박균택 위원** 나도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장을.
- 유상범 위원** 그게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박균택 위원님도 진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그다음에 순서 드리도록 할 테니 제 얘기를 들어 주세요.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거슬렸는데요. 차관님, 차관님은 수갑 차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곽규택 위원**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질문이 아니고 답변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말만 해요.

○**위원장 정청래**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차관님, 체포 리스트에 본인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없지요.

체포 리스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있는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이재명 대표 있는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여당이 야당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이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를 공격한 거예요. 국민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진압이 안 돼 있고 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저항하면서 그 집행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경호처 직원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모여 있는 영장을 집행하는 세력이, 내란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가서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내란 동조 행위だ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2의 내란 사태다,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상 보더라도 과반 이상 훨씬 많아요.

그런데 법무부차관이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은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박군택 위원님이 마침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장님, 그 부연설명을……

○위원장 정청래 그렇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 질문하는 과정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비교적 잘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가 국민만 보고 가야지 내란 세력만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헌법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주진우 위원 질의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마세요.

○조배숙 위원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지킨다고 해야지 국민을 바라보냐고요!

○유상범 위원 지금 위원이 질문을 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박지원 위원 들어 보세요! 왜 이래요, 오늘?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서로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어찌 됐든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예민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위원들도 예민해 있고 민주당 위원들도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단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방금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불러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님, 저 한마디……

○위원장 정청래 부연설명?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할 게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아까 내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냐, 맞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인데 다만 제……

○박범계 위원 어떻게 대행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박범계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제 벌어 놓은 점수 다 까먹고 있어, 오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취지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내란 사태라고 하는 게, 내란 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박범계 위원 정신 차리라니까 정신도 안 차리고 지금……

○조배숙 위원 법적인 판단이에요, 법적인 판단.

○위원장 정청래 자, 조용히 하시고요.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법적으로는 제2의 내란 사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밝혀서 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배하고 무너뜨린 것이 내란이에요.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 국헌문란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조배숙 위원 이게 무슨 내란이에요?

○유상범 위원 뭐가 내란인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논쟁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성윤 위원 이게 내란 아니면 뭐예요? 뭡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내란이냐고, 이게.

○이성윤 위원 내란이지요! 내란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김용민 위원 내란 옹호 그만해요!

○조배숙 위원 지금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게 무슨 내란이에요?

○박균택 위원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내란의 수괴가 살아 있는데.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는데 왜 내란이에요?

○유상범 위원 아니, 국민들은 평안한데 국회의원만 내란이라고 선동을 해, 그렇게.

○김용민 위원 윤석열 팔아서 정치 그만해요. 윤석열 돋는 게 아니야, 그게.

○이성윤 위원 내란에 동조하는 게 뭡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위원님들……

○조배숙 위원 뭐가 부끄러워?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게 무슨 부끄러워요?

○김용민 위원 윤석열 팔아서 정치하는 거지! 가장 치졸한 정치 방식이지, 그게.

○송석준 위원 냉정합시다. 여기 법사위예요.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이 내란이냐고.

○박균택 위원 검찰도 내란이라고 얘기했고, 내란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수괴가 살아 있어요!

○이성윤 위원 내란은 진행 중이야, 진행 중!

○위원장 정청래 지금부터 위원장의 제자에 따르지 않는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자유롭게 다니는데 무슨 내란이에요?

○박균택 위원 수괴가 살아 있어요!

어디 누가 자유롭게 다닙니까?

○조배숙 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안 다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 박균택 위원, 이성윤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 왜 뒤로 숨어 있습니까, 내란수괴가?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내란이냐고.

○박균택 위원 저자들이 지금 한남동에서 내란수괴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게 무슨 내란이냐고! 부끄럽지도 않아?

○주진우 위원 이 상황이 내란 상황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 왜 아닙니까? 수괴가 살아 있어요, 수괴가!

○조배숙 위원 아니, 상황을 호도하지 마세요. 상황을 호도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일단 조용히 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경고! 경고! 퇴장당해요. 조심해요. 언성 높이지 마시고.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이 원래 퇴장을 많이 당할 뻔했는데, 조용히 해 주시고요.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곽규택 위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위원장 정청래 예.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하는데 상대방 위원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렇게 질문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질문을 받은 정부위원이 답변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저렇게 답변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독재고 그게 내란입니다.

저는 지금 내란 상황이 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법을 조금이라도 전공한 사람이라면 지금이 내란 상태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법무부차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 가지고 그걸 화를 내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불러서 왜 질의를 합니까, 그냥 상호 간에 토론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평소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위원이 대답하는 것 또 국민의힘 위원이 질의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막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옛날 문화혁명 아닙니까? 그게 내란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상황이 다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내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강요하는 답변을 그렇게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법사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저 대체토론……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곽규택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저렇게 어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매우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민주당 위원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지 못하게 해 달라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거니와 제가 그런 답변 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차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조배숙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뭐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조배숙 위원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신중하게 답변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관님, 제가 신중하게 답변하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차관으로서 신중하게 답변하라 하는 말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저도 앞으로 답변에 그런 국민들의 어떤 정서 등을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규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해 가면서 또 우리 기관장들께서는 국민 정서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답변이 됐습니까?

○곽규택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지금 곽규택 위원님마저 만족하시는구만요.

○서영교 위원 질문이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질문……

○박은정 위원 대체토론……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조배숙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 서영교 위원님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할 텐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지금 경호처장 체포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발부가 되었는데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어요. 이것은 불법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55수도경비사단을 동원했어요. 군병력을 동원한

겁니다. 국방부차관이 동원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도 모두 불법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 박종준 경호처장 긴급체포 가능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기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긴급체포 하면 되는 겁니까? 긴급체포 할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긴급체포 요건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군 경비단도 동원했어요. 긴급체포 사항입니다. 긴급체포 가능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긴급체포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지원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윤석열을 체포해 갖고 나올 때, 윤석열은 여태껏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여태껏 저항하고 경호처에게 지시를 했어요, 자기를 지키라고. 그리고 군까지 동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긴급체포 할 때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수갑을 채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을 수갑을 채워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요건에 충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서영교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나올 때 수갑 차고 나왔어요, 안 차고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비상계엄이 적법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협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불법입니까, 불법한 협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불법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 지금 국회를 병력으로 막고 경력으로 막았어요. 총을 들고 오게 했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것은 불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 검찰에게 집행을 하게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검찰도 불법성 협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를 막았어요. 불법이에요. 여기에 불법 혐의가 말이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11월 4일 검찰 수사보고서가 완성이 됐어요. 거기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과 대화를 나눈 카톡과 텔레그램이 자그마치 280개가 나왔어요. 11월 7일 윤석열이 화들짝 놀라서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나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11월 14일 명태균이 이야기합니다. ‘나 구속시키면 윤석열 금방 탄핵될 텐데, 한 달 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윤석열이 김용현을 불러서 명태균을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월 2일 명태균이 ‘내가 황금폰을 민주당이나, 제출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사에. 그러자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을 윤석열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고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는 이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당겨지게 된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데 위원님, 이 문건은……

○**서영교 위원** 제가 정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 국회에 백골단이 왔어요. 김민전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백골단을 데리고 왔어요. 이승만 시절의 반공청년단이에요. 이들은 반공청년단이라고 해요.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한마디 말을 못 해요. 말을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이와 관련해서 백골단을 들인 이 국민의힘 김민전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해 보세요.

백골단을 대한민국 국회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공청년단의 후속이다. 그리고 오늘 출범식을 한다’. 출범식 기자회견을 국회에 들어와서 하게 했어요.

백골단이 학교에 있던 시절 법원행정처장님 학교 다니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전 백골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이화여대였는데요 백골단이 이화여대에 있으면 학생들이 밤에 다니지도 못했어요, 무슨 일 당할까 봐. 기본적으로 머리채 끄집어 잡혀서 질질 끌고 나가던 인간들이 백골단이에요. 이런 백골단을 데리고 온 그 저의가 뭘까요?

아직도 윤석열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국회의원 잡아 와, 내가 제2의 비상계엄, 제3의 비상계엄 계속 선포할 테니까’. 그래서 내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골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 슬기로운 대처로 자칫 소멸할 뻔했던 현정질서가 조기에 신속하게 회복됐다는 이런 부분, 그 외에 지금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또 앞으로 맡게 될 내란죄 재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저는 22항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에 관해서 대체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그저께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돼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올라온 안건인데,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부결이 됐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보완을 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국회 합의 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국민적 기대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법안에는 심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단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내란죄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시방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심판을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예단적인 표현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럼요. 지금은 충분히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서 어떤 심리를 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법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될 우리 법사위장에서 단정적인 내란죄, 내란 공범, 내란수괴라는 표현이 나온 건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들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이 법사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다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민의 뜻인데 여기서 표현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처장님의 그런 것은 지적해 주셔야지요.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박지원 위원** 국민의 뜻을 어떻게 처장님이 지적해?

○**송석준 위원** 간접하지 마시고요.

법무부장관대행님, 지금 모든 수사를 하면서 반드시 체포가 원칙입니까? 인신 체포가 원칙이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체포는 조사를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수사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요? 명쾌하게 정리가 됐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여러 가지 논란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확실하지요? 논란이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여러 가지 논란 있는 수사 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면서 또 무리한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적법성에 상당한 추정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송석준 위원**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체포의 대상이 다른 일반 잡범이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 아직,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 소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예우를 갖출 필요는 있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송석준 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직 대통령 최종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분을 체포하고 수갑 채워 간다는 것이 국격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을까요, 이렇게 국격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많을까요? 이거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당연하지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헌법 질서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기 계신 법 전문가들 또 사법부에서 알아서 엄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체포를 하겠다라고 온갖 루머, 온갖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도피한다, 도주한다? 이분이 그랬다면 지금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피했다, 도주로를 인위로 만들고…… 상상에 의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모독하고 아래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소설을 써도 여러 가지 소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국격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분들이 바로 이러한 지금의 사태는 정말 이제 국격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조심스럽게, 언어 사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체포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대행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장님 소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재 엄중한 시기에 여러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거 맞습니다. 관련된 수사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된 분들이 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격을 보호해야 되겠지요? 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단호한 발언 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시간 끝났어요. 남한테는 시간 끝났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시간 끝났는데……

○**송석준 위원**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통령님께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또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헌정 질서하에서 법치주의가 이걸 통해서 더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어요.

○**송석준 위원** 최대한 상대방에 대한 예우 또 국격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예’지요, ‘예’?

○**위원장 정청래**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칭송받던 대한민국을 내란 국가라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든 윤석열 내란수괴가 국격을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외신 어디에도 내란이라고 단정 짓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면 법사위원장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그거는 이론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해 봤자 국민의힘 불리하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 귀하들이 존경하는 윤석열 검찰에서도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송석준 위원** 누가요?

○**박지원 위원** 검찰.

○**송석준 위원** 누가?

○**박지원 위원** 검찰.

○**송석준 위원** 이름이 누구예요, 그 사람? 어떤 검사인지 얘기해 보세요, 혼내 주게.

○**박군택 위원** 박세현 고검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어떻게 혐의자를 갖다가, 내란수괴라고 단정하면 그러면 그거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김용현 공소장 보세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요?

○**박군택 위원** 쓸데없는 소리니까 뺏습니다.

○**서영교 위원** 현재에서는 안 뺏어요, 내란 행위가 다 들어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거는 맞습니다. 검찰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 맞아요.

○**송석준 위원**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가 윤석열이지 내란 졸개가 윤석열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맞아요, 그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김기표 위원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언어 조심합시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새로 발의된—22항이지요—이른바 내란 특검법이라는 법안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봤습니다.

○**김기표 위원** 어제도 본회의장에, 어제는 아니군요. 내란죄 특검법 기존에 재의 요구한 이유가 골자가 있을 텐데 그동안 간단히 뭐였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특검의 임명 방식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한 부분이었고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임명 방식이 해결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되네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제삼자 추천이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게 해결된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은 없겠네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문제, 임명에 있어서. 그러면 그게 해결되면 당연히 재의 요구를 할 명분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김기표 위원** 다른 측면은 뭐가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김기표 위원** 그건 부수적인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법무부차관께서는 이른바 내란죄 특검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대전체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재의 요구 설명할 때도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일단은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겠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전 국민이 내란죄 특검이 빨리 출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아무 판례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양보해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양보를 한 법안이거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그래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규정이라면 그런 점을 참작해서 정부에서 의결이 됐을 때 다른 여타 부수적인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재의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명심하십시오, 주무장관으로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한 동료 위원께서 꼭 신병을 확보하고 대통령을 기소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관님, 공수처에서 이거 체포영장 하기 전에 출석요구 세 번 한 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사실은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두 번 출석요구 했었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공수처로 수사가 이관되기 전의 2개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 출석요구에 불용한 겁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체포영장이 왜 발부되었을까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뭐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출석 불용 또는 출석 불용 우려인데……

○김기표 위원 자,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는 것이 무리한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김기표 위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행태가 무리한 거냐고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대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거고……

○김기표 위원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집행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영장 자체가, 물론 효력이 명령장이라기보다는 허가장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당연히 집행해야겠지요. 체포영장을 그러면 장난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는데 전혀, 궤변만 늘어놓고 협조하지도 않고 출석 하라고 하는데도 출석하지도 않고, 다섯 번이나.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

사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위원께서 그게 다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느냐고 질문 제기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까 개인적인 의견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뭐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신병을 확보해서 기소를 하냐 마냐 이유를 대면서 심지어 무슨 대선 기간을 앞당기니 마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되고 타이로 묶여 갈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체포되어 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 배에 실려 가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위협을 느끼는 여기 있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5·18 때, 그 전의 계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전체 국민들이 지금 빨리 저 사람이 체포돼서,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돼야만 내가 빨 빼고 자겠다고 하는 정서적인 것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꼭 확보하고 기소해야 하느냐는 궤변을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석준 위원 궤변이 아니지요, 궤변이.

○김기표 위원 궤변이지요.

제가 차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송석준 위원 1분 지났어요. 김기표 위원님, 시간 지키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 사항이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시간 엄수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전부 다 토론해야 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주로 내란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주진우 위원님 그다음 박희승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 **주진우 위원** 차관님, 특검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히 수사 대상 부분인데 그게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때문에 그러시지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 **주진우 위원** 지금 이 특검법 내용을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수사 대상 부분이 사실상 특정이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마치 내란죄 관련돼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비상계엄 사태 관련돼서 출동했던 군 지휘관 전원 또 그와 관련된 경찰 수뇌부 전부 다 구속해서 지금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 수사받을 때 출석해도 전부다 진술거부권 행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 남은 거라고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 정도인데 대통령조차도 경찰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공수처가 그것을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 수사 논란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지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 **주진우 위원**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청구하면 검찰이 이때까지 무슨 영장을 한 번도 기각한 적도 없고 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굳이 공수처의 영장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왜 또 하필이면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이례적으로, 이때까지 다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왔는데 왜 이번만 서부지방법원으로 피해 갔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법성 논란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법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7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군하고 경찰을 동원한 것 외에 지금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행위’라고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법사위에서 제가 특정은 안 하겠지만, 여기 법사위에서 발언을 하실 때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는 ‘일반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단, 비상계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일반 국민들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가 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뭐,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말한 프레임대로 얘기 안 하고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8호를 보면 대북확성기 가동 이런 것들은 북한과의 서로 대치 국면에서 대응적 조치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치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써 오던 것입니다. 북한은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북확성기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대북정책은 안보상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도 하셨다시피 기간의 특정 없이 대북정책을 마치 외환죄인 것처럼 규정한 부분도 이게 지금 정책을 수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10호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범위에 대해 가지고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다 포함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란이나 외환죄로 이를 적어 가지고 일반 국민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단체나 일반 유튜버들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해도 그 사건들 중에 가져와서 선별적으로 누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

요.

그러면 결국 특검이라는 것이 이게 대충 어느 정도,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이 정도, 어느 범위 내에서 내가 수사 대상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특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저는 일반 검찰청을 민주당 산하에 하나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대상 부분에 대해서 역대 특검법을 보면, 제가 그 드루킹 특검법도 한번 봤거든요. 총 호수가 4호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짧아요. 한 네다섯 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호수에 대해서 되게 선명성 있게 쓰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수사 대상이 뭐와 관련된 의혹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결론을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고문하려고 했던 의혹, 무슨 이런 의혹들도, 다 지금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규명돼야 될 내용들까지 전부 다 이게 예단해 가지고 써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 부분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정확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묻고 계시는데 형법 80조에 보면 내란에 대해서 ‘국헌문란’ 이렇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91조에 보면 국헌문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놨어요. 헌법기관을 무력을 동원해서 기능을 상실시키고 마비시키는 것 자체, 그게 곧 국헌문란이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도 법조문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지금 법조인 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꽤 됐습니다.

○**박희승 위원** 꽤 많이 되셨지요? 저도 판사 생활도 오래 하고 했습니다만 법조인이라면 이런 법률 조항을 비춰 보면 더 이상 뭐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게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시비가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거는 이제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간명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내란 우두머리는 우리 내란죄에 사형, 무기징역만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형법상 반란죄는 사형만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희승 위원** 군 통수권자는 반란죄도 형법상 해당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희승 위원** 왜 이렇게 무거운 죄가, 형법이나 우리 법에 사형, 무기징역이 있는 죄들이

보통 어떤 죄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아주 중대한 범죄에 국한돼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굉장히 무서운 중대한 범죄지요. 조선시대나 과거에 보면 내란죄 발각되면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희승 위원** 중국에서는 9족을 멸했어요, 9족.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현재 지금 공소장에 내란죄 우두머리로 윤석열 피의자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희승 위원** 지금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가 벼젓이 버티고 있잖아요. 거듭된 소환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 법원을 통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지금 집행하려고 하니까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런 상태가 제거가 되고 헌법 질서가 안정이 돼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국격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빨리 가서 외교도 하고 우리나라 실리를 취할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쳐다만 보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엄청 힘듭니다. 폐업하는 집들도 많고 영업이 안 돼요, 지금 이런 내란 행위 때문에. 지금 수장격인 분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은 내란 상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게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

그리고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국무위원 자격은 아니고 대행하는 자격이라……

○**박희승 위원** 그래도 발언은 할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발언이 있고 표결권은 없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대통령권한대행 최 대행이 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상 우리 대통령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막 남발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남발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거부권 행사 자체는 과거에 노 대통령 당시에도 행사한 사례는 있어서 거부권 행사 자체를 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범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

○**박희승 위원** 지금 현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는 안 했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정말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제 법률 상식으로는 이런 정책적 견해 차이나 예산상의 차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재의 권한쟁의심판 받으면 거부권 안 된다고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차대한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 재판관도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있고 더구나 대법관도 임명하지도 않고—국회 동의가 끝

난 대법관을—이러한 일들이 계속, 헌법 위반행위를 죄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하고 박은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이성윤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위원장대리 박범계**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안 보여 가지고.

아까부터 손을 들었어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장관직무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떠나서 특검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 사법 체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검찰이 왜 필요하고 경찰이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뭐 하려 그렇게 악을 쓰고 만들었습니까?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하고 있는 모 의원께서는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고요, 영장 발부된 이후에도 당사에 칩거해서 당직자들이 막아서서 영장 집행 못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소장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봤습니다.

○**장동혁 위원** 정확하게 8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82페이지가 내란죄에 관한 것이고요, 직권남용에 관한 것이 마지막 딱 한 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에서는 본질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사건을 가져간 것입니다. 자꾸 직권남용을 걸고넘어지면서 직권남용과 같이 하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83페이지 중의 82페이지가 내란죄고 한 페이지가 직권남용인데 뭐가 주입니까? 95%는 내란죄잖아요, 5%가 직권남용이고요. 그런데 그것 수사하겠다면서 내란죄 가져가서 지금 저리고 있으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공소장에 우두머리로 적시가 돼 있다면 그만큼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아까 주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피의자가 출석해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 사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범죄의 소명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장관을 그렇게 83페이지의 공소장을 적어서 내란죄를 82페이지 적시하면서 기소를 했다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적시했다면 그만큼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필요하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기소하면 됩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계엄령·포고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 모든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됐던 이 사건 그리고 관련자들, 군 관련자들, 전 국방부장관이 지금 구속 기소돼서 다 조사받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출석한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진술할지 진술하지 않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출석에 목매달고 체포영장에 목매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검찰에 있는 수사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압박하고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 결론 내야 된다고 그렇게 압박하는데 특검의 보충성에 비추어서 또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보충성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가 거의 다 진행됐고 거의 다 기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 기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 증거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장동혁 위원 확보돼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진술 빼고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 어떤 사유의 어떤 사정의 장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체포해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특검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데, 재청구해서 영장까지 다시 발부받았는데?

저는 조항이고 뭐고 저런 것 다 따지지 않고요, 보충성에 비추어서 지금 수사 상황에 비추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공수처를 만들고 지금 공수처에게 여러 수사를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저는 보충성에 비추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특검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박은정·유상범 간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저는 1분만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성윤 위원님 시간이니까 다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했습니다.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참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협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지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내란수괴 용산 대통령이 관저에서 철조망 치고 차벽 쌓고 하면서,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석열산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혼자 산속에 숨어서. 이런 사람을 비호해 주고 체포영장 집행을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하실 때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체포해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잖아요. 오늘 나왔으니까 경찰에서는 바로 긴급체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의견을 말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긴급체포를 하려고 그러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성윤 위원 지난번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에 대해서 검찰이 불승인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긴급체포 할 경우에 절대 불승인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검찰을 잘 감독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특수본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아까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내란당’, ‘내란의 힘당’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요.

○이성윤 위원 국민들은 정말 밤을 새워 가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속 있는 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밤을 새워 가면서 체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아까 내란이 종결됐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사실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시면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란의 상당한 의심이 있는 그런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전두환 12·12 내란 사건 판결문 읽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그때 내란 종결이 언제 됐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내란 종결 자체가 5·18 선언 그 사태 이후에, 그 구체적인 것은……

○이성윤 위원 그렇게 법률을 공부 안 하시고 판례도 안 읽어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2·12 판결 보면 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81년 1월 23일 날 내란이 종결됐다고 봤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 기억납니다.

○이성윤 위원 그 이유는 실질적 위험성으로 보는 겁니다.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수괴가 계속 있는 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내란이 안 끝난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보세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하자 국힘 국회의원 44명이 거기에 몰려갔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점심 먹고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외 지구당 60명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용산 관저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정말 국민들께서 봤을 때 ‘맹윤, 쫀윤, 친윤’ 이렇게 많아도 결국은 다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내란 부화수행자로 보는 겁니다. 합부로 내란이 종결됐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 윤석열 대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특공대나 기동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면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관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방법이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 없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특공대를 동원해서,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하면 그게 내란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절차가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2년에 한 말입니다. ‘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똑똑히 보여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관님, 검찰에 정말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윤석열을 분명히 체포·구속하고 경찰에서 경호처 수사할 때 막지 말라고 경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대행님, 지금 김용현 등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속 기소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의사일정 22항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피의자가 지금 법원을 쇼핑하듯이 어느 법원은 맞고 어느 법원은 틀리고 이러면서 또 오늘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이런 망발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김용현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모두 구속 기소하신 것 맞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은 내란수괴거든요. 우리가 범죄단체를 봤을 때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이 밑의 사람들 다 구속되는데 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세월아 네월아

재판받겠다고 하는 게 양형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양형에 안 맞는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본인이 맨날 얘기했던 게 그것 아니에요? 더 벅 스톱스 히어(the buck stops here)인가요? 책임 모두 자기한테 있다고.

부하 직원들 지금 모두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이 내란에 가담하면서. 본인은 체포·구속도 되지 않고 어디 관저에 숨어 가지고 적법한 체포영장, 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에서 김용현 등 구속 기소할 때, 이 사건은 사실은 군형법상 군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 군형법 5조에도 해당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군형법 적용을 계속 배제를 하고 있어요.

차관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금 전두환하고 이게 똑같거든요. 전두환은 군사 반란으로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정치 댓글에 대해서 본인이 민간인이기 때문에—김용현하고 똑같지요—군형법 적용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적으로는 군형법 적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군사 반란, 내란수괴 혐의가 윤석열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고 군사 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소할 때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이 돼서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맞지만 공수처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란수괴를 체포·구속하는 것만이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사기관이든 공수처든 누구든 빨리 이 내란수괴를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차관님, 혹시 판결문 읽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판결문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박은정 위원 판결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다,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첩 보류 지시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첩이 되는 과정에서 중단을 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 그런데 부당한 이유는 이종섭 장관이 수사 내용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성근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첩한 것이 맞는데, 박정훈 대령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을 중단시킨 이것이 잘못됐다, 그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거거든요.

대구지검에서 왜 임성근 기소 안 합니까? 6개월 됐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여러 가지……

○**박은정 위원** 박기동 검사장한테 이 사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관련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법리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뭘 면밀히 검토를 몇 개월이나 합니까?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대구지검에 간 지가 6개월 넘었어요. 지금 박정훈 대령의 판결까지 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기소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팀……

○**박은정 위원** 그래야 임성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차관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상?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내란·외환죄 외에는……

○**박은정 위원** 외에는 어렵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내란·외환죄 외에는 기소가 불가능한데 기소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사람부터……

○**박은정 위원** 박근혜 당시에는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된다는, 견해가 많이 나뉘고 있긴 합니다.

○**박은정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명태균 보고서 어제 언론에 나왔는데요.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김건희 씨 서로 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 보고서 받았다는 건데 김건희 왜 안 부릅니까, 창원지검에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창원지검에서, 그 관련된 내용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미 이루어져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아니, 수사가 지금 진행된 지가 언제고 김건희 나온 게 지금 몇 개월 됐는데 김건희 왜 소환을 안 하시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적절하게 지금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김건희를 부릅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아마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겠나 싶

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건희를 불러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핵심 관계자들 모두 구속됐고 벌써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준비 중에 있지요,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돼 가지고 핵심자 중에 수사를 안 받거나 처벌을 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없지요? 다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모든, 비상계엄 이후에 소위 내란죄로 전부 다 구속돼서 기소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국현문란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무슨 선관위가 아직도 우리 계엄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까, 아니면 국회가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민주당 위원들은 내란 중이다, 내란 진행 중이다, 내란 선동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미 평온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민주당이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직무정지돼 가지고 국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직무정지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장 또 국무총리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현재에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모든 사태는 종결됐고 이제 사법처리만 남아 있는 거지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이지 내란 진행 중이다, 내란 선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은 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내란이라고 평가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12월 3일 당일의 상황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아마 내란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때 내란죄로 기소된 내용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기소된 거지 현재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내란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반적으로 간접적인 당사자들의 의도라든지 또 우리 헌법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한 일곱 명 되지요? 한 1년 동안 지금 불출석하고 있지요? 그들한테는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재 일곱 분 중에 일부는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 조사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모든 게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하더라도.

행정처장님,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미 발부가 됐으니.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규정돼 있는 소위 군사비밀 시설에서의 수색을 위해서는 결국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피고인의 경우에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신병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거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 조항을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 내에서 이 조항이 물적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정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직은 판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판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해석론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만 나왔는데 처장님은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적 압수수색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류적인지 아닌지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은 체포영장은 수사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수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형사소송법 주석서 입장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부당한 주장이다, 불법적인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처장께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됐으니, 형식은 재항고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빨리 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처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절차 내에서 다투도록……

○**유상범 위원** 아니, 110조는요 영장 발부 조건이 아니에요. 영장 집행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부 조건이라면 다르지요. 그런데 영장 집행의 조건의 경우에는 발부됐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해석 아닙니까?

○**박희승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불복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판단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나중에 서영교 위원 하시는 거 들어 보세요. 마이크 쓰고 3분이에요.

○**박희승 위원** 아니, 더 하시라고, 시간을 달라 그래요.

○**박범계 위원** 좀 잠깐.....

○**서영교 위원** 자기 얘기나 해. 왜 내 얘기를.....

○**박범계 위원**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조용히 좀.

아까 김기표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부권 행사된 종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를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했고, 위헌적 요소가 있긴 뭐가 있느냐.....

그러나 장관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직전에나 아니면 어제나 참모들과 오늘 국회에 나오며 회의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늘 합니다.

○**박범계 위원** 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장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무부의 의견이지. 앞으로 그런 '개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나 백배 양보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장관직무대행께서 지적하는 야당만에 의한 특검 추천이 가장 본질적인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됐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핵심적인 요소는 제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박범계 위원**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돼서 다시 정부로 이송되는 경우에 대통령직무대행은 아마 법무참모인 장관대행과 상의를 할 겁니다. 그 경우에 핵심적으로 위헌 시비가 있었던 이 조항에 대해서 그것은 사라졌기 때문에, 본질적인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은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제거가 됐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추후에 재의 요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잘 전달하겠습니까?

역대 열네 번, 열세 번의 특검 중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네 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전 개발……

○**박범계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용훈 대법원장님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추천한 특검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결과로서 무슨 문제가 야기된 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 부담스럽고 사실은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으면 합니다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특검이 대법원장 추천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는 사례입니다.

다시 장관권한대행, 우리가 국현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다 할 때 폭동이라는 것이 군병력,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경우에 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닙니다. 5·18 사건에서 나왔듯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자체도 폭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지요? 민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법체계, 특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폭동이 될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장관의 기억으로는 백골단 어떻게 기억이 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사실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백골단이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아니라서 저는 직접적인 그런 기억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잘 몰라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얘기 들은 것은 많습니다.

○**박범계 위원** 백골단을 좋아해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백골단을 혐오합니까? 우리 헌정 질서에서 백골단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박범계 위원** 한남동 일대에서 대통령 관저에, 오늘 경호처장이 출두했지만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화기를 무장하고 있는 약 700여 명에 가까운 경호 병력이 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그분들이 체포 집행을 결사 항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언론 통해서 알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지요? 그리고 관저 앞에서 소위 아스팔트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이 체포 집행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막겠다고 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거꾸로 민주당과 야당이 오히려 내란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박범계 위원 어찌 됐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전국에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급기야 백골단을 만들었다 그래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포집행을 막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 젊은이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안내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12·3 내란 사태의 위험성과 위법성이 해소된 상태입니까? 여전히 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국민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위험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험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한 번 했잖아요.

○박균택 위원 저는 그냥 제 발언을 포기하고 토론 종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최고의 국정 안정이고 내란 진압이 국가안보이고 경제요 평화입니다.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의 내란이 계엄군이 중무장을 하고 국회를 쳐들어왔다면 백골단이 어제 국회에 들어온 것은 제2의 내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불을 진화할 때도 우리가 산불의 진원지, 큰불을 진압해야 합니다. 지금은 산불만 진압된 상태고 큰불은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불이 다 진화가 안 된 것처럼 내란 진압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직도 내란수괴 피의자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세력이 이곳 국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고 제2의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헌법 87조 4항에 보면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문민정부의 전통을 우리 국정에 있어서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군사 쿠데타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역 군인은 국무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군복을 벗은 민간인 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헌법 77조 5항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하게 돼 있지요. 의무 사항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군사 반란 쿠데타를 국회에서 막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 역할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당 해산권은 있지만 의회 해산은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것도 바로 이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러한 국민들의 몸부림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일반적으로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절도를 했다고 해서, 소매치기를 했다고 해서 국가원수인 국군통수권자인 행정부 수반인 사람은 5년 동안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만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민주적 절차로 뽑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가원수일지라도 이것만은 법치주의로서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 앞의 평등이 그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 재직 시에도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백골단 경험하지 못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백골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내 시위든 아니면 종로, 명동에서 시위를 하든 백골단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잡히지 않으려고 뛕니다. 뛰다가 여학생들은 운동화 벗겨지고 하이힐 벗겨지고 그리고 머리채 잡히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젖 먹던 힘까지 달립니다. 그러다 어디 걸려 넘어지면 백골단이 와서 곤봉으로 머리, 온몸을 후려갈깁니다. 그 악명 높았던 백골단이 국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까 차관한테 물었는데 수갑 차 본 적 없다고 그랬지요? 저는 많이 차 봤어요. 경찰에 잡혀갈 때도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검사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도 법원에 출정할 때도 수갑을 찹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치소에 가면 다 신체검사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내란수괴 피의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규정에 의해서 수갑을 췄듯이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통령 예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격을 생각하자고요? 지금 평온한 일상을 회복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장 치명적으로 실추시킨 것이 윤석열입니다.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차관,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상으로 토론할 위원들은 없을 것 같고요.

박균택 위원님이 토론 종결 동의, 본인은 지금 희생을 한 거예요. 국회법상 토론을 마친 사람은 토론 종결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토론을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토론 종결 동의권이 지금 있는 겁니다.

박균택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지원 위원님 등으로부터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토론 종결을 표결 없이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기 직전에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고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0항까지 이상 4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첨가 위원(1인)

장경태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민홍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